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24서식] <개정 2025. 8. 14.>

내압용기 파기증명서

자동차소유자	성명(명칭)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주소
자동차	차명
	최초등록일
	등록번호
	파기용기 개수

장착 위치	용기			밸브 및 안전장치		
	용기의 번호	파기사유	파기 방법	밸브 번호	파기사유	파기방법
참관자			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파기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인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